

예천군 공고 제2024-1637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2023년 집중호우 재해복구의 일환으로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『한천(1~2공구) 재해복구사업』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28일

예 천 군 수

1. 사업 개요

- 사 업 명 : 한천(1~2공구) 재해복구사업
- 사업예정지 :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우계리 ~ 은풍면 오류리 일원
- 사 업 량 : 하천정비 L=7.856km, 교량 2개소 등
- 사업시행자/주소 : 경상북도지사 /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
- 사 업 기 간 : 2024년 1월 ~ 2026년 8월

2. 공고기간 : 2024. 11. 28. ~ 2024. 12. 13.

3. 공고장소 :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

4. 공고내용

- 협의기간 :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
- 협의장소 :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하천팀(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)
- 보상방법 :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완료 후 계좌 입금(현금보상)
 - 위 협의기간 중 미협의 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
- 구비서류
 - 인감증명서 2부, 주민등록초본 1부(주소이력 포함), 통장사본 1부, 인감도장
 - ※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등기 후 협의
 - ※ 미등기인 경우 등기 후 협의
 - ※ 소유권 이외의 권리(근저당권 설정, 압류 등)에 관한 사항은 해지 후 협의

5. 공시송달 대상 : 별첨

6. 기타사항

- 본 공고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(송달)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(송달의 효력발생)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.
-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8조(재결의 신청)의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안전재난과(☎054-650-644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